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85

발의연월일: 2021. 5. 10.

발 의 자: 강병원 · 기동민 · 김병욱

김병주 · 김승원 · 김회재

박성준 • 박홍근 • 서영석

윤재갑 • 이상헌 • 이수진

이용빈 · 최종유 · 허종식

의원(15인)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모델은 한계에 부딪혔고 지속적인 교육과자기계발을 통한 창의성 발현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내생적 성장이론이 각광을 받고 있음. 실제로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선진기업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적극적인 휴식 보장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고도화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1,967시간(2019년 기준)으로, OECD 2위에 달함.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 휴식 여건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자기계발 역량을 훼손함. 이는 결국 경제성장의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고도화하여 경제성장을 유도할 필

요가 있음.

또한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적용 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구인난을 유발시키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휴식권을 보장할필요가 있음.

이에 법안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또한 설날· 추석·어린이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선거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고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조건인 민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국 민에게 공평하게 공휴일을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 을 이루어 경제성장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휴 일을 적극 보장함으로써 레저 활동 증가 등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도 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식권의 보장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민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 그 밖에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 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 함(안 제2조).

- 다. 일요일, 선거일, 그 밖의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안 제3조제1항).
- 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의한 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사용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주어야한다(안 제3조제2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휴일(公休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 식권의 보장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 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1. 일요일
-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6. 5월 5일(어린이날)
- 7. 6월 6일(현충일)
-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9. 12월 25일(기독탄신일)
- 10. 그 밖에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11.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이 토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

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이 토요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의한 휴일과 겹칠경우 사용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충일 및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기념일 중 국군의 날
- ②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관공서의 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③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관공서의 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